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(김현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4. 7.

발 의 자: 김현정·이향숙·김진경·
이도희·황영각·복진경·
우종혁·안지연 의원
(이상8인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
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
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4조)
- 라. 위탁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동노동자”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,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.
2. “이동노동자 쉼터”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동노동자 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쉼터의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
2.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·복지서비스 제공
3.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, 문화,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
4.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

제5조(위탁) ① 구청장은 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,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컴퓨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컴퓨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